

정은 제9조제1항·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「건축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.

◇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독립된 지하도상가 외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를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지하도상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, 종전까지 실내공기질이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기숙사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,

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되,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설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5월31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 김대환  
노동부장관

◎法律 第7563號

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

最低賃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最低賃金法”을 “최저임금법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類似勤勞者의賃金 및 勞動生産性を 고려하여 事業의 種類別로 구분하여 정한다”를 “유사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就業期間이 6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18歲미만의 勤勞者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
2. 「근로기준법」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

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
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2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 
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 
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  
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2.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 
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各號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 
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당해年度 9월 1일부터”를 “다음 연도 1월 1일  
부터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1千萬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  
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부칙 제3항은 2005

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 
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 
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③(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)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「근로  
기준법중개정법률」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 
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 
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  
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 
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◇최저임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 
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  
산성 외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도록 하고, 도급계약에 있어서  
직상(直上)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  
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때에는 직상수급인과 당해  
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 
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